

(재)파주문화재단 대관 유의 사항

문화 시설 유의 사항

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 정책에 따라 법령이 강화되고 있으며 파주문화재단 문화시설은 등록 공연장으로써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 이에 따라 파주문화재단 문화시설 이용하시는 분들께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안전한 시설 사용을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| 파주문화재단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내

▣ 관련법령

-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(안전교육)

▣ 교육대상

-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/ 스태프 또는 작업자 전원 공연법 제2조(정의) 1항의 정의된 공연 음악, 무용, 연극, 연예, 국악, 곡예 등

▣ 교육시간

- 1시간 이상 (현장 교육 1시간 또는 온라인 교육 55분+현장교육 5분)

▣ 온라인 교육방법

1. 공연장 안전 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 (<https://safety.kbrainc.com>)
2. 회원가입
3. 공연자 과정(출연자, 스태프 또는 작업자)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
4. 온라인 교육(55분) 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
5.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(5분) 확인

▣ 유의사항

1. 수료증은 모든 출연진, 스태프 또는 작업자 전원 제출
2.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3. 재공연에도 꼭 제출해야 합니다.

| 공연장 방염 의무화 안내

▣ 관련법령

1. 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
→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
2. 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
→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/ 문화 및 집회 시설

▣ 방염대상 물품

1. 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
2. 화재 예방,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
→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/ 암막, 무대막
→ 무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천, 막, 합판 등

▣ 방염 필증 제출

- 공연일 제출 및 사전에 각 공연장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제출

▣ 공연장 공통 유의 사항

- 공연 대관 2~3주 전 각 공연장 감독과 사전 스태프 회의 진행 필수 /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장치(장비), 특수효과 등 사용 불허

| 공연장별 유의 사항

▣ 시민회관

- 공연장 사용에 있어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. 안전요원 미배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진다.
- 대공연장에서 체육행사 진행할 때 모든 체육 종목에 대한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.

▣ 문산행복센터

- 공연장 사용에 있어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. 안전요원 미배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진다.

▣ 운정행복센터

- 공연장 사용에 있어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. 안전요원 미배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진다.

▣ 슬가람아트홀

- 공연장 사용에 있어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사전대비 하여야 한다. 안전요원 미배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책임을 진다.
- 피아노, 팀파니 등 무대 내 악기 이동은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
- 각 연습실 피아노는 이동 불가,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사용자 측에서 책임을 진다.